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24. 권영숙 의원 외 7명

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0. 12. 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권영숙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주요 용어 정의 (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3)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등 (안 제4조)

- 4)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 안 제6조)
- 5)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의 심의 등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6)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정 형성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,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하여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간 “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”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, 2015년 19,214건, 2016년 29,674건, 2017년 34,169건, 2018년 36,417건, 2019년 41,389건으로 평균 10%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.(표 1) 또한, 같은 자료 2017년도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발생한 신고접수는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건,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22건 등 총 124건입니다(표 2)

○ 최근 우리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 수를 보면 10월, 11월 2개월 동안 18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(표 3)

○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, “신고의무자”가 신고한 경우는 초·중·고 교직원이 19건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건 순이며, “비신고의무자”가 신고한 경우는 부모가 26건, 아동본인이 21건, 이웃이나 친구가 12건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.

○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14년 9월 제정된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으나,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전적인 학대 상황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,  
안 제3조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을,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을,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심의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“마포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”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,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,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종합 검토의견입니다.

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명문화되고 담당부서의 관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·방지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